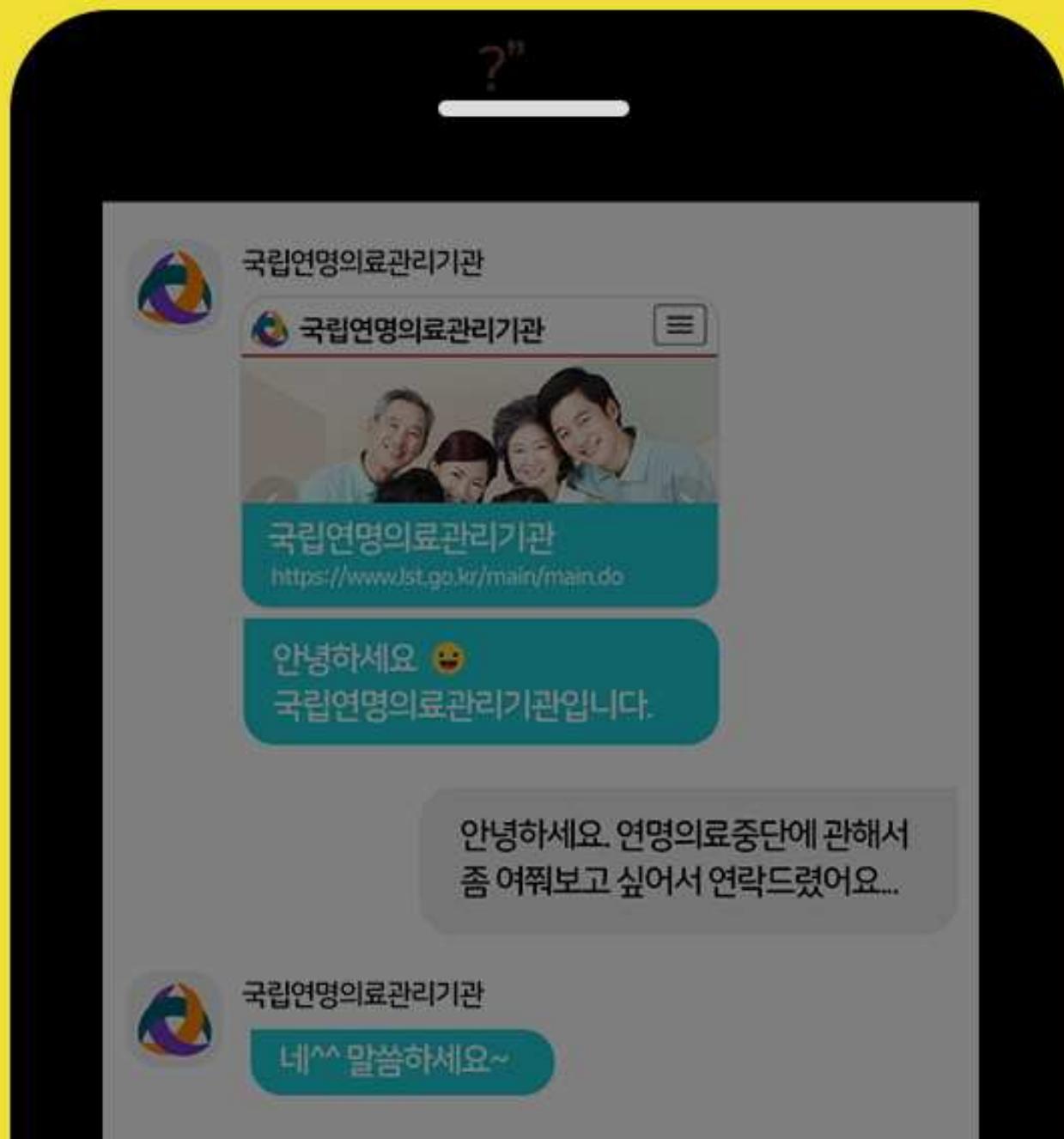


연명의료결정제도

톡톡톡

- 우리 할머니, 어떡하죠?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https://www.lst.go.kr/main/main.do>

안녕하세요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입니다.

안녕하세요. 연명의료 중단에 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서 연락드렸어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네^^ 말씀하세요~

할머니가 뇌졸중과 몇가지 합병증으로
오랫동안 요양병원에 계시거든요.
가족들이 이제 편안히 보내드리자고
뜻을 모았는데 올해부터 그런 법이
시행되고 있다면서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네. 올해부터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안내드리기 전에 할머니께서 어느 병원에 계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서울에 있는 oo 요양병원에 계신데요..
그게 병원과 상관이 있나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네!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연명의료 중단이나 유보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등록한
병원에서만 가능하세요. 그래서
어느 병원에 계신지 여쭤본 거예요.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 의료기관
www.lst.go.kr/plan/composableorgan.do



아.. 그래요? oo 요양병원은
등록이 되어 있나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지금 계신 병원은 등록된 병원이기
때문에 연명의료 중단·유보가
가능한 병원이시네요

네. 그럼 저희가 뭘 준비해야 하나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그런데 연명의료결정제도는 모든 환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생가능성이 없는
사망이 임박한 임종과정 환자에 대해서만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어요.



회생가능성이 없다고 하셨어요..
의식도 거의 없으시고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그래도 대상환자에 대한 의학적 판단은
담당의사 선생님과 다른 전문의가
같이 하셔야 하기 때문에 의사선생님과 먼저
법의 대상이 되는지 논의하셔야 할 것 같네요.



임종과정 환자 판단을 받게 된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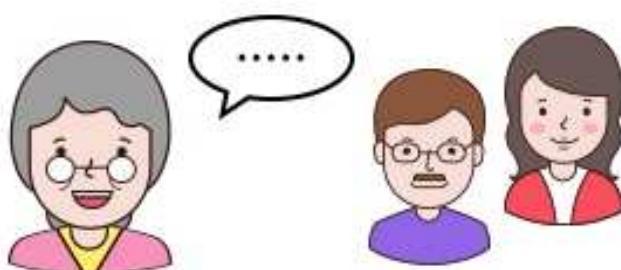
그 후에는 환자의 뜻을 확인하는데,
환자의 뜻을 모르면 가족의 뜻을 확인하는
절차를 받게 됩니다.
혹시 할머니께서 의식이 있으신가요?

아뇨.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그러시다면 혹시 할머니께서 평소에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말씀을 하신
적은 있으세요?



네.. 늘 가족들한테 불필요한 치료는
하지 말라달라고 하셨었어요.
그래서 이제 편안하게 해드리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에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그럼 그런 할머니의 뜻을 가족 두분 이상이
동일하게 진술을 해주시면 할머니의
연명의료 중단 결정으로 인정을 할 수 있어요.

그럼 가족 전원이 동의를 할
필요는 없나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네, 가족이 환자의 뜻을 알고 있어서 진술할
수 있으면 전원의 동의를 받으실 필요는
없으세요. 환자의 평소 뜻을 모르는 경우에만
환자가족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거든요.



그 다음은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임종과정에 있다는 판단과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확인이
되었다면 연명의료를 중단·유보할 수
있습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다만 환자를 위한 통증완화,
영양분이나 물 공급, 단순 산소 공급은
중단하실 수 없어요.

아 그렇군요! 설명 감사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의사선생님을
만나서 의논해 봐야겠네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 1855-0075나
플러스친구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네 감사합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이었습니다.